

세계 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 회칙

World Federation of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s
(World-KIMWA)
BY-LAWS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 칭(Name)

본회는 “세계 국제결혼여성 총연합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World Federation of Korean Inter-Married Women's Associations”),
“World-KIMWA”라 한다. 한글은 “월드킴와”라 한다.

제 2 조: 장 소(Located)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때에 따라서 지방에 둘 수도 있다).

제 3 조: 목 적(Objects)

본회는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한인 국제결혼여성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다민족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과 정보 공유를 하고 조국의 국위선양과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하는 민간 외교관 역할에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제 4 조: 본회는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친목과 발전도모
2. 한인 세계국제결혼 여성들의 문제해결 및 세미나 개최
3. 조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4. 한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한 봉사

제 2 장 회원(Membership)

제 5 조: 자격

본회 회원은 한인 여성으로써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며, 회원의 의무를 한 자에 한한다.

제 6 조: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자문위원, 특별위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

World-KIMWA 세계대회에 2 번 이상 참석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

World-KIMWA 지회의 회원을 준회원 이라 한다.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약간 명의 명예회원 (자문위원,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명예회원의 자격은 국제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은 없다.

제 8 조: 회원 자격의 상실

회원이 탈퇴를 원할 시에는 탈퇴 이유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협회의 불이익을 초래 했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임원 2/3 참석자, 또는 CONFERENCE CALL 에 응한 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시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제 9 조: 집행부:

- 회장-1 명 \$10,000
- 수석부회장-1 명 \$3,000
- 제일부회장-1 명 \$1,000
- 제이부회장-1 명 \$1,000
- 사무총장- 1 명 \$1,000
- 감사 -2 명 @\$1,000
- 재무 -1 명 \$1,000
- 총무 -1 명 \$1,000
- 이사 회비 \$1,000

이사회:

- 이사장 - 1 명 \$3,000
- 부이사장 -1 명 \$1,000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세계대회에 2 번이상 참석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임명된 이사는 이사회비를 익년 1 월 30 일까지 납부 해야하며 납부된 이사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이사 중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각 지역 지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단 회비\$1,000 을 3 개월이내에 납부한자) 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따라 세계대회에 1 번 나온 자를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2 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제 10 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차기 회장 임기는 12 월 1 일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모든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 할수 있다. 임원 가운데 결원이 발생할 때 회장은 다른 회원을 지명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1 조: 선임방법-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 재무, 이사, 이사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의 운영에 따라 회장은 다른 부서를 만들 수도 있다

제 12 조: 업 무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전임 회장의 잔여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제일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의 잔여 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회장과 총회에 보고한다.
사무총장: 본회 운영 및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총무: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모든 행정 사무를 기록, 유지한다.
재무: 재정 회계를 전반 관리하여 기록하고, 장부를 보관하며, 총회 회의 전 감사 받은 후 총회에 결산 보고 한다.

제 4 장 총회(회의운영)

제 13 조: 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 등의 회의를 둔다.
총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2 년 마다 세계대회 기간 중에 한다.

제 14 조: 정기총회(The Annual General Meeting)
2 년 마다 세계대회 기간 중에 한다.
정관 제정(개정) 및 수정을 한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인준(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과 감사선출을 한다.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이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정관을 개정 및 수정을 원하는 회원은 총회 15 일 전으로 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Extra Ordinary Meeting)
임시 총회는 회장이나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서면으로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안건을 20 일 전에 각 회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16 조: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협조 할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비를 납부한 30 명 이내로 정한다.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 소집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과 이사장은 회의 20 일전에 이사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계획 업무를 수행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공문, 공탁금, 출마 등록)
이사 회비는 미화 \$1,000.00 을 익년 1 월 30 일 이내로 지불 해야 한다.

제 17 조: 임원회(Executive Committee Meeting)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할 시 소집 할 수 있다.
임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결 숫자가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회장은 회의 20 일전에 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무 및 회계

제 18 조: 재 정
본회의 수입은 참가비, 회비,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 월 1 일부터 다음해 11 월 30 일까지로 한다

제 20 조: 회계결산

본회의 수입 지출 명세서는 매해 11 월 30 일 까지 정산한 후, 이를 15 일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정기총회 시는 이를 11 월 30 일까지 당선된 회장에게 인수인계 한다

단, 회장은 당 회계년도 적자 결산을 차기 회계년도에 넘길 수 없으며 30 일 이내에 책임진다.

제 21 조: 해산 및 정산

본회는 회원이 전무한 관계로 여타 협회에 합병될 경우, 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 청산인이 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 기부한다.

제 6 장 선거규칙

제 22 조: 선거권 자격:

최근 5 년 이내에 세계대회에 2 번 이상 참가한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제 23 조: 회장 후보자 자격

1. 회장 후보자는 본회에 2 년 이상 이사로 봉사한 자, 또한 매 임기 이사비를 납부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협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적어도 두명 이상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하며 또한 본인의 수락을 받은 자로 한다. 회장출마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전체 2/3 이상 이사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회장 출마자 가 없을 경우 현 회장은 1 번만 더 연임 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기가 만기 되었을 시 자동적으로 고문으로 추대된다. 고문은 월드킴와 모든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4. 공탁금
 - 1) 회장 출마자들은 총회 60 일 전 까지 미화 \$5000.00 공탁금을 출마 등록시 지불하고 지불된 공탁금은 환불 하지 않는다.
 - 2) 회장에 당선된 자는 회장 회비 미화 \$10,000.00 을 익년 4 월 30 일 이내로 지불 해야 한다.

제 24 조: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대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투표함, 투표용지, 개표방법, 무효투표 등 모든 선거의 원칙과 방법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선거관리 위원은 3 인으로 정한다. 선거 참관인은 2 인으로 한다

제 25 조: 투표 거부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등록을 대행하거나, 회비를 대납하는 행위가 발견 되었을 때,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를 취소 할수 있다.

제 26 조: 선거 방법

1.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2. 회장은 반드시 의결 정족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만약 1/3 득표를 못했을 때는 이사회에서 2/3 이상 추천을 받은 자와 재 투표를 하여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3 차 투표시 다 득점자로 선출한다.

3.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자라도 선거를 통해 의결정족수의 1/2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만약 얻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 27 조: 이의 신청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 실시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접수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 28 조: “ World- KIMWA” 의 지부 와 지회는 World -KIMWA 의 정관을 따르며, 본부의 지시를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한다.

제 29 조: 본회 정관은 총회의결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0 조: 본회 정관의 개정, 합병, 해산의 경우도 재적 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1 조: 총회 시 투표를 행할 시에는 이를 회원들에게 30 일 전 전자메일이나, 홈 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안건을 통보한다.

제 32 조: 본회는 다음 장부를 운영 보관해야 하며 신 회장단에게 11 월 30 일까지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1. 본회의 등록증 및 관계서류(정관, 재단 지원금신청서, 재단 집행결과보고서),
2. 회원명부,
3. 금전출납부(통장),
4. 이사 수락서, 참가신청서, 등

정관개정 2018 년 10 월 21 일
정관개정 2015 년 10 월 21 일
정관개정 2011 년 10 월 26 일
정관개정 2009 년 10 월 22 일
정관개정 2008 년 10 월 20 일